

식품등회수및공표에관한규칙개정령

- 보건복지부령 제146호(2000. 3. 3) -

보건복지부는 식품등의 회수명령 및 공표명령을 구분하여 그에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식품등을 자진회수하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출입·검사 등을 생략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회수및공표에관한규칙을 개정 공포하였다.

○ 주요골자

- 가. 식품등을 자진회수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자진회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 계획에는 제품명, 회수사유, 자진회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
- 나.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중대하고 급박한 경우에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식품등에 대한 회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식품등의 위해가 신속히 방지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단서).
- 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회수명령에 의한 회수계획 및 결과 등이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계획 및 결과의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자진회수를 하고자 하는 영업자가 자진회수계획서에 의하여 성실히 자진회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식품등의 자진회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출입·검사 등을 생략하도록 하여 식품등의 자진회수가 활성화되도록 함(안 제1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1조의2 및 제56조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회수·공표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수대상 식품등) 이 규칙에 의한 회수대상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가 자진회수를 결정한 식품등
2.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권고없이 회수를 명령한 식품등

3.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심의위원회가 회수를 권고한 식품등

제3조(자진회수계획) ①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의 자진회수를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식품등의 자진회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명, 식품등 제조·가공업소(식품소분업소·유통전문판매업소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또는 상호, 판매경로, 판매량
2. 회수사유
3. 회수방법
4. 회수기간
5. 회수되는 식품등의 폐기등 처리방법
6. 일간지에의 게재, 판매장에의 게시 등 당해 회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의 자진회수계획을 제출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진회수결과의 제출)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회수계획을 제출한 영업자는 자진회수계획에 의하여 당해 식품등을 자진회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진회수결과를 자진회수후 지체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등의 제조·가공량, 판매량, 회수량,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
2.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②제3조제2항의 규정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식품등의 자진회수결과의 통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회수명령) 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의 회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중대하고 급박하여 신속한 회수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명령에 관한 의안을 심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의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그 심의결과를 당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명령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2.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3. 식품등 제조·가공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4. 회수명령사유

제6조(회수계획)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없이 회수대상 식품등의 유통·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식품등의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회수명령을 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2항의 규정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식품등의 회수계획의 통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회수결과의 보고)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획에 의하여 당해 식품등을 회수하고,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결과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2항의 규정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식품등의 회수결과의 통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공표명령) 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발생사실을 공표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의 식품등 긴급회수문으로 식품등의 회수광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공표결과의 보고) ①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결과를 공표명령을 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표일자
2. 공표매체
3. 공표횟수
4. 공표문 사본

②제3조제2항의 규정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식품등의 공표결과의 통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시정명령등)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보고된 계획이나 결과가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출입·검사 등의 생략)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의 자진회수를 하고자 하는 영업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자진회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영업소와 자진회수대상식품에 대하여 자진회수계획에 의한 자진회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및 수거 등을 생략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식품등의 회수의 권고등은 제2조제3호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4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식품회수평가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별 표]

식품등 긴급회수문 (제8조관련)

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표명령을 받아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합니다.

1. 회 수 제 품 명 :
2.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
3. 회 수 사 유 :
4. 회 수 방 법 :
5. 회 수 영 업 자 :
6. 영 업 자 주 소 :
7. 연 락 처 :
8. 기 타 :

- * 주의사항 : 1. 식품등 긴급회수문은 서울특별시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의 1면 내지 5면 사이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2. 식품등 긴급회수문의 크기는 5단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활자는 고딕체로 하며, 색상은 눈에 잘 띄는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